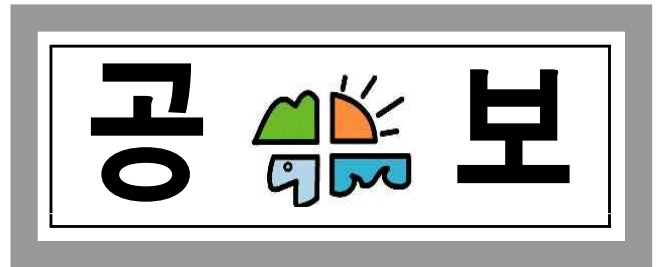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696호 2012년 4월 26일(목)

공 고

- 2012/2013년 어장이용개발계획 공고..... 2
- 속초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 입법예고..... 3

회 란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2012/2013년 어장이용개발계획 공고

「수산업법시행령」 제2조제7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 2012/2013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0 1 2 년 4 월 2 3 일

속 초 시 장

□ 2012/2013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사항

업종별	위 치	수면 번호	면적 (ha)	개발사유	사 유 및 조 건
합 계		2건	37.00		
정치망 어업	대포동 지선	①	12.00	대 체 (이설)	- 기존면허(제7호) 면적 범위내 개발(대모망) - 다른 어업과의 분쟁 예상시 사전 해소후 면허처분 - 인근 어촌계(외옹치,대포,내물치) 사전 동의 - 어선 항로 확보등 사전협의 - 기존어장(제7호) 철거·청소 후 개발 - 어장좌표 및 보호구역 설정 - 보호구역을 기존 면적보다 20%이상 축소하거나 보호구역 너비를 3배 이내로 함.
정치망 어업	대포동 지선	②	25.00	대 체 (이설)	- 기존면허(제8호) 면적 범위내 개발(대모망) - 다른 어업과의 분쟁 예상시 사전 해소후 면허처분 - 인근 어촌계(외옹치,대포,내물치) 사전 동의 - 어선 항로 확보등 사전협의 - 기존어장(제7호) 철거·청소 후 개발 - 어장좌표 및 보호구역 설정 - 보호구역을 기존 면적보다 20%이상 축소하거나 보호구역 너비를 3배 이내로 함.

□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해양수산과(☎ 639-2469)로 문의바랍니다.

속초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제정 입법예고

속초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6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물놀이 사망사고는 교통사고, 화재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많으며, 짧은 기간(6월부터 8월)에 집중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절실하여 안전관리를 추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물놀이 안전예방 투자, 사전대비 등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착으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 수립(안 제4조)
- 나.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확충(안 제5조)
- 다.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안 제6조, 제7조)
- 라.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및 배치(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 마.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모집 및 교육훈련(안 제16조, 제17조, 제18조)
- 바.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 수립(안 제19조, 제22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1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재난지원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030/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469-6)

속초시청 재난산림관리과 재난지원담당(전화: 033-639-2265, FAX: 033-639-2588)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재난산림관리과 담당자 전준표(전화:033-639-226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이란 해수욕장,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써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2. "물놀이 안전사고"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단, 어로행위(낚시, 투망 등), 도강, 실족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수난사고는 제외한다.
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이라 한다)"이란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게시한 구역을 말한다.
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라 한다)"이란 익수자 구조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자로 제8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안전관리대책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
6. "특별대책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속초시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및 대응계획 전반에 적용한다.

제2장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매년 4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 계획
2.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계획
3.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
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
5. 대국민 홍보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 등

제5조(안전시설 정비·확충) ① 시장은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물놀이 안전시설(이하“안전시설”이라 한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표지판,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등
2. 인명구조함 또는 이동식 거치대
3. 구명환·구명로프(투척로프)·구명조끼
4. 전망대, 감시탑(관망탑) 등 이와 유사한 시설
5.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 장비
6. 그 밖에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장비

③ 안전시설은 전체 수량을 산출하여 부족장비는 확충하고, 훼손장비는 정비하여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안전시설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물놀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안전시설의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안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를 조정할 수 있다.

⑥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시설물 설치·관리는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관리지역 전수조사) ① 시장은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해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수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

존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이용객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 DB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구역 설정·게시) ① 시장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는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③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서 퇴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거 시장이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방법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시장은 관리지역내에서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2. 유급안전관리요원
3. 119시민수상구조대, 의용소방대 등 소방관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
4.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을 위해 「고용정책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확보한 인력
5. 해병대전우회중앙회, 대한민국특전동지회, 한국구조연합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6. 지역자율민방위대, 대학생자원봉사대 등

제3장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운영

제9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안전관리요원은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역 여건에 따라 배치하되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유지를 위해 시장이 총괄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
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
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③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대 등을 설치하는 기관 등은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배치기준) 관리지역내 안전관리요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및 피해우려가 높은 지역 : 고정배치
2. 관리지역 이외지역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 순찰배치

제11조(운영기간) 안전관리요원의 운영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근무시간) 안전관리요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 다만, 관리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임무) 안전관리요원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예찰 활동
2. 인명구조활동
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
4. 응급환자 응급처치
5. 구명조끼 무료대여
6.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복제)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에 대해 근무복 및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복 및 안전장비의 종류는 시장이 정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
2. 근무 중 음주·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
2.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장 안전관리요원 모집·교육훈련

제16조(자격기준)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
2.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3.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 이수자
4.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7조(모집·선발) 시장은 제4조에 의하여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요원 대상을 구분 모집한다.

제18조(교육 및 훈련)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모집·선발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
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
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등 근무요령

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요원의 교육훈련은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

제19조(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5월 해당연도의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담 TF팀 구성·운영

2. 휴일비상근무 및 현장 점검반 편성·운영
3. 상황보고체계
4.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
5.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6. 대국민 홍보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0조(휴일비상근무) ① 시장은 안전관리대책기간내 휴일 비상근무자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대책기간에는 제1항에 의한 휴일 비상근무자를 확대·운영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현장점검반) ① 관리지역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별로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현장 점검반에 대한 교육은 소방학교,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장 점검반은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점검에 임하여야 하며, 점검된 내용을 신속하게 재난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상황보고)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 강원도지사 및 소방방재청장에게 3시간 이내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고서식에는 사고일시, 장소,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기상상태, 인명피해 및 인적사항, 사고원인 및 조치결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즉시보고 후 사고현장에 출장하여 사고원인 등을 다시조사 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는 현장 확인 결과보고서로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유관기관과의 협조) 속초소방서장, 속초해양경찰서장 및 속초경찰서장 등은 시장이 제22조에 의한 현장 조사시 사전에 조사된 참고인 진술 등 정보공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비밀유지) 제23조에 의해 취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하며, 소송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제6장 예산 및 홍보

제25조(안전시설 설치비) 시장은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5조에 의한 안전시설 정비·확충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관리요원 운영비) 시장은 제8조에 의한 안전관리요원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7조(홍보) ① 시장은 제4조 및 제19조에 의한 사전대비계획 및 대응 계획 수립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홍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TV, 신문, 라디오 홍보
2. 전광판
3. 스마트폰, 아이폰
4. 인터넷, 트위터, 아고라
5. 현수막
6. 반상회보, 전단지
7. 차량이용방송
8. 민방위경보장치, 재난예보·재난경보시설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